

월간 웨도

중소기업을 위한 월간 법률 실무 해제

창간호 · Issue 01

2026년 4월

발행 / 법무법인 가나다 · 신한솔 변호사

이번 호 목차

섹션 01 —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해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섹션 02 — 소수주주 축출의 구조: 유상증자 희석, 배당 거부, 한국 상법이 가지 않은 길

섹션 03 — 이 달의 판례

편집자의 말 — 월간 퀘도가 다루는 것

월간 퀘도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오너와 실무자를 독자로 상정하는 월간 법률 해제지다. 본지 섹션 1은 매호 하나의 법률 분야를 택해, 사건이 어떤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지, 어떤 법령·시행령·유권해석·판례가 그 절차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과 경영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과 예방의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해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지는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다. 현행 법령·시행규칙·유권해석·결정례·심판례·판례를 체계적으로 읽어내어, 그 속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실무 구조를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낸 해제다. 개별 사건의 진행은 변화무쌍하며 각 기관 절차의 실제 진행 속도에도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편차가 있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본지는 그 구조를 전한다. 또한 본지는 한 호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인접 주제(하도급·외국인 근로자·중상해 등)는 해당 호의 본문 또는 후속 호에서 별도로 해제한다.

따라서 월간 퀘도는 읽어서 배우는 글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쓴 글이다. 목차·조문·판례 사건번호가 뺄뺄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경영의 현장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본지는 읽기 편한 글보다 정확한 글을 지향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실무 해제

0. 도입

대구·경북의 중소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슬픔도 책임감도 아닌 '이해 불가'의 감각이다. 119와 경찰이 도착하고,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노동관서의 감독관이 현장에 나타난다. 며칠 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관이 방문한다. 그 사이 작업중지명령이 서면으로 내려오고, CCTV와 안전 관련 서류에 대한 제출 요구가 쌓인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을 어디서 해야 하고 무엇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본 해제는 이 절차의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의 경험담이 아니라 현행 법령과 판례가 정해 놓은 절차의 구조를 정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문 하나가 어떤 기관의 어떤 권한과 맞물려 움직이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 의무가 어떤 국면에서 발동되고 어떤 벌칙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의 범위는 무엇인지. 이 지도가 있으면 사고의 한복판에서도 다음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지도가 없으면 모든 선택이 사후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로 귀결된다. 본지가 쓰이는 이유다.

1부 — 절차의 해부

이 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 판결 및 그 이후의 행정적·경제적 파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절차를, 관여 기관·법적 근거·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서술의 주어는 사장이 아니라 절차와 법령이다.

1. 사고 발생 직후 — 기관의 개입과 시간의 층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 — 정확히는 '119 신고 버튼이 눌린 순간' — 이 시점부터 사업장은 더 이상 사업주의 관리 영역이 아니다. 최소 다섯 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각자의 법령 근거에 따라 중첩적으로 수사·조사를 개시하며, 사업주는 각 기관에 대해 각기 다른 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다만 이 다섯 층의 개입이 모두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절차는 시간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절차는 주·월 단위로, 어떤 절차는 연 단위로 움직인다. 사업주가 사고 직후 직면하는 혼란의 상당 부분은 이 시간축의 층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 장은 각 기관의 개입 시점을 시간축에 따라 분리하여 서술한다.

첫 번째 층은 119 구급대와 관할 경찰서다. 119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와 이송을 수행하고, 사망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형사절차의 외피를 입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현장을 보존한다. 변사사건은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 하에 현장감식과 부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주가 이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오해는 '이것이 산업재해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법적으로는 정반대다. 변사가 확인된 그 순간부터 경찰과 검사에게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의 수사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그 위에 얹히는 별개 혐의다.

두 번째 층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 방식·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피해 상황·조치 및 전망을 보고).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은폐 행위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0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 제재(과태료)와 형사 제재(벌금·징역)는 층위가 다르고, 은폐로 판정되는 순간 제재 수위도 달라진다. 시공능력평가 사고사망만인을 산정 실무상으로도 보고 해태·은폐 전력은 가중치가 이월되어 간접적 불이익을 확대한다. 이 보고를 받은 노동관서는 즉시 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감독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155조에 근거하며, 그 범위는 사업장 출입, 관계자 질문, 장부·서류 검사, 시료 채취 등에 이른다.

세 번째 층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다.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지도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업무 수행 차원). 노동관서 감독관의 조사가 '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단의 조사는 '사고의 기술적·공학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 공단 조사관의 현장 임장은 사고 직후 수일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조사 결과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또는 「재해조사의견서」로 정리되어 노동관서·검찰에 이첩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된다. 사고에 기술적·공학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설비의 결함, 작업방법의 표준, 기인물의 인과성 등)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별도로 요구되어, 의견서의 확정 자체가 반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문서의 법적 위상에 관해서는 수사의 본체 부분에서 별도로 다룬다.

네 번째 층은 관할 지방검찰청이다.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는 검사의 지휘 하에 진행되므로 검찰의 개입은 이미 첫날부터 시작되어 있다. 다만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노동관서 감독관의 수사결과 송치 또는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회신 이후다. 이 본수사 단계가 시작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하도급 구조로 책임소재가 다층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확인된다. 검찰은 이 시점부터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기소까지의 전체 기간은 사안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편차를 보인다.

다섯 번째 층은 근로복지공단이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의 산재 신청을 접수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이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사업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유족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실무상 사업주·관리감독자·도급인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은 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한다. 이 구상권 청구는 통상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 현실화되며, 금액은 지급된 유족급여·장례비·요양급여 전액에 이를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업장의 업종과 사고의 성격에 따라 추가 기관이 개입한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경우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이,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팀과 국가화재정보센터가, 건설현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 건축과가 각각 자체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한 조사를 수행한다.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수사가 별도로 개시된다.

사고 직후의 초기 단계(통상 수 시간~수 일)에 사업주가 동시에 부담하는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의 보고의무(제2항)와 즉시 작업중지·대피 의무(제1항), 제56조 제3항의 현장 보존의무(훼손·원인조사 방해 금지), 제55조 제1항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준수 의무, 재해자에 대한 응급 구호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고 협조의무,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제56조 제3항은 특히 형사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실무상 가장 경계해야 한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70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판결은 사고 직후 사측 관리자가 혈액이 묻은 안전모를 현장에 배치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며, 본지가 인용하는 여러 판결 가운데 '초동 대응의 실패가 별건 기소로 귀결되는' 구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 인지 당일 또는 익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이 서면으로 내려진다. 이 조항의 문언과 해석, 해제 절차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룬다.

기관	개입 시점	주요 행위	법적 근거
119 / 경찰	사고 인지 즉시 ~ 수 시간	응급구조·이송 / 변사 처리·폴리스라인·현장보존·현장감식·부검 의뢰	응급구조에관한법률 / 형사소송법 제2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지방검찰청)	변사 지휘 즉시 / 분수사 착수 수개월~1년 이상	변사 검시·사법경찰관 지휘 / 중처벌·산안법·업과사 병합 기소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 / 중처벌 제6조, 산안법 제167조 이하, 형법 제268조
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사고 보고 접수 직후 ~ 수 일	작업중지명령·현장조사·장부열람·관계자 조사·송치	산안법 제54조·제55조·제155조·제168조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노동관서 요청 후 수일 내 현장 입장, 의견서 확정 수주~수개월	기술적 사고조사·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검·노 이첩	산안법 제56조 제1항·제156조, 시행규칙 제71조, 공단 재해조사업무규정
근로복지공단	유족의 산재 신청 접수 후 (별도)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

기관	개입 시점	주요 행위	법적 근거
	트랙)	지급·제3자 구상권 검토	71조·제87조
기타 (업종별)	사고 성격에 따라	환경부(화학사고) / 소방서(화재·폭발) / 출입국(외국인) / 지자체·국토부(건설) 등 독립 조사	각 개별 법령

초기 단계에서 이 기관들의 조사가 겹쳐지는 지점이 사업주에게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사업주는 같은 사고 경위를 경찰, 노동관서 감독관, 공단 조사관에게 각각 진술하게 되는데, 각 기관에서의 진술은 별개로 기록되고 이후 수사·기소 단계에서 교차 대조된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노동관서에 진술한 내용이 사소하게라도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추후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 사업주 본인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료 근로자 등 관련자의 진술이 모두 각 기관에서 따로 수집되어 한 파일로 모이는 시점에는 사업주 측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변호인 선임이 초동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사고 인식 단계의 진술 정리가 이후 전체 절차의 기초 사실로 고착되기 때문이다.

2. 작업중지명령의 법적 구조 — 산안법 제55조의 세 층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는 작업중지명령을 세 항으로 나누어 규율한다. 제1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해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 중지를 가능하게 한다. 제3항은 사업주에게 해제요청권을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의 법문상 차이는 중지 범위를 다투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제1항이 명하는 것은 '해

당 작업'의 중지이지 사업장 전체의 중지가 아니다. 이 구분은 명령의 문언 해석과 위임의 범위를 두고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작업을 계속한 경우 같은 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1029 판결 등에서 실제로 같은 조항 위반으로 기소·처벌된 사례가 확인된다.

해제 절차의 실무적 작동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해제 신청서와 함께 재해원인의 시정 조치 완료 증빙(외부 안전진단기관의 진단서, 설비 보수 내역, 관련 근로자 재교육 이력 등)을 제출한다. 관할 노동관서는 이를 해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산업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한다. 심의 결과가 긍정적이면 해제가 결정되고, 부정적이면 추가 조치 후 재신청을 요구한다. 규정상 기한은 빠듯하게 설계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은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70조 제2항은 심의·의결 결과 안전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무상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체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시정 완료의 명확성,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같은 규칙 제69조 제2항)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규정상 기한을 초과하여 움직이는 경우도 관찰된다. 이 기간 동안의 생산 중단 손실과 해제 신청 준비의 완성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실무상의 결정 포인트다.

3. 하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특정

제조업 외주 공정, 건설 현장, 조선업 블록 작업 등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책임 주체의 특정 자체가 선결 과제가 된다. 원청과 수급인이 존재하는 2단계 구조만 하더라도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데, 대구·경북 산단과 건설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쟁점이 다층화된다. 이 복잡성이 실무상 수사

장기화의 핵심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의 소재다. 같은 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급인이 자동으로 수급인의 재해에 대한 중처벌법상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니며, 실질적 지배·관리의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측면에서는 2019년 전면개정으로 도급인의 책임이 크게 확장되었다. 같은 법 제63조 이하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합동 안전점검 의무, 작업장 순회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며, 이 의무들의 주체 특정 기준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지배·관리'가 제시된다. 다만 산안법상 '건설공사발주자'(제2조 제7호 단서)는 도급인과 구분되며, 발주자에게는 도급인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은 이 구분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판시는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사업에서 시공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권한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시공자격 보유 여부는 구분의 결정 요소가 아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핵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연간 보수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며 수급인에게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사정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판례 이후 건설 사건에서 원청·도급인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발주자 지위'를 주장하여

중처법·산안법 책임에서 벗어나는 법리 구성이 자주 시도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으로 이를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명시한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484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하여 중처법 무죄, 산안법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이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재하도급 구조에서는 이 판단이 세 층 이상으로 확장된다. 원청 — 1차 수급인 — 2차 수급인(실제 시공사) 구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2차 수급인 소속이라면 중처법상 의무는 각 층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1차 수급인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는지, 원청이 그 위에서 여전히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2차 수급인이 독립적 시공 역량을 갖춘 사업주였는지 등이 모두 쟁점이 된다. 각 층의 사업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은 각 층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공정 분담·지시 체계·보고 체계를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에는 관련 계약서, 작업계획서, 회의록, 현장 지시 기록, 안전교육 이력, 관리자 배치 등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대조가 요구된다. 공단의 기술적 감정이 별도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결과적으로 책임 주체 특정 자체에 1~2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각 층의 사업주는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는 국면이 발생한다.

대구·경북 산단의 중소제조업 사업장에서 이 구조는 두 방향의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자동으로 중처법·산안법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지배·관리의 범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책임 한정의 핵심이다. 도급계약서에서 작업 범위·지휘권·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지시·점검이 이 계약 구조와 일치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실질적 양 측면의 방어선이 된다. 둘째,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는 원청의 지배·관리 정도에 관계없이 자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원청의 보호망에 의존하는 구조는 중처법상 책임 구조에서 유효하지 않

다. 재하도급 구조의 최하단에 위치한 사업주가 가장 취약한 법적 지위에 놓이는 경향이 실무에서 반복된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설계 과제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도급인의 안전 확보 의무는 원청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일정 수준 개입할 것을 전제하는데, 그 개입이 인사·노무관리상의 지시로 해석될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 시비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업무 지휘·명령의 실질, 인사노무관리, 작업편성 및 성과관리, 설비·도구 통제의 정도 등 다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청의 안전지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파견 관계가 성립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 안전 가이드라인이 작업 지시의 형식으로 전달되거나 원청 관리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직접 통제하는 정황이 기록에 남으면, 수사·감독 과정에서 두 쟁점(중대재해 책임과 위장도급 의심)이 동시에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원청은 도급계약서 단계에서 안전관리의 주체·범위·소통 경로를 명확히 설계하고, 현장에서 안전 관련 지시가 업무 지휘로 읽히지 않도록 경로를 분리하는 운영이 실무상 요구된다.

4. 수사의 본체 — 노동청·산업안전공단·경찰·검찰의 병행

사고 인지 수 주 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의 재해조사가 본격화된다. 조사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이며, 같은 법 제156조는 공단 소속 직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 하에 수행하는 검사·지도 권한을 규정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3개 혐의를 병합 기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 호가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 영역에 걸친다. 위험성평가서와 그 작성·결재·수정 이력,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내 업무지침 및 공문(수년치), 사고 직전 CCTV 영상, 관련 임직원의 휴대전화 데이터, 외부 안전진단기관의 보고서 및 지적사항, 안전관리자 인사발령 및 조직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보고체계 문서, 과거 산업재해 이력과 행정처분 전력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들이 결집되어 독립한 문서로 편성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다. 이 문서의 법적 위상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며, 별도의 해제를 요한다.

재해조사의견서의 법적 위상

재해조사의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에 근거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다(같은 법 제156조). 작성의 실무적 세칙은 공단의 「재해조사 업무 규정」 및 「중대재해 조사지침」에 따른다. 문서의 통상적 구성은 ①사고 개요 및 피해자 인적사항, ②사업장 일반 현황, ③사고 발생 경위의 시간순 재구성, ④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설비·환경·작업방법의 결합), ⑤기인물 및 가해물의 분석, ⑥관련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 평가, ⑦법령 위반 사항, ⑧동종·유사 재해 예방 대책, ⑨참고자료(현장 사진, 도면, 관계자 진술 요약) 순이다.

이 문서는 법원에 직접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가 아니라 노동관서와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되는 문서다. 그러나 실무상 그 영향력은 수사참고자료의 범주를 크게 넘는다. 첫째, 노동관서 감독관은 이 의견서의 '법령 위반 사항' 항목을 기소의견 송치서의 기초로 삼는다. 둘째, 검찰은 이 의견서의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분석을 공소장상 공소사실의 기초로 활용한다. 셋째,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의견서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증거목록에 수록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도면 등의 기초 자료가 모두 이 의견서의 첨부자료에서 파생된다.

민사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 구상권 행사에서 이 문서가 핵심 자료가 된다. 공단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그 기여도를 판단하는 1차 자료가 바로 재해조사의견서다. 필자가 외부 자문 변호사로서 근로복지공단 자문 수행 중 받아본 구상권 행사 의뢰 사건들에서도, 첨부자료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이 의견서가 있었다. 의견서상 사업주의 법령 위반과 직접 원인 판단이 명확할수록 구상 금액은 커지고, 반대로 의견서가 사고 원인을 피재자 본인의 과실로 상당 부분 배분한 경우에는 구상 범위가 축소된다.

이 문서의 실무적 위력의 원천은 그 작성 주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공단 조사관은 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며, 조사의 초점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에 있다. 기술적 사실 판단은 법원이 뒤집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이 때문에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 사업주 측이 기술적 반론을 조직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면, 그 결과물은 수사·기소·판결·구상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주에게 불리한 기초 사실로 고착된다. 공단의 현장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 측이 제출 가능한 기술적 자료(설비 검사 이력, 제조사 매뉴얼, 외부 진단 결과, 동종 업계 표준)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견서가 확정되어 검찰로 이첩되기까지의 공백기는 사업주 측 방어권 행사의 실효적 구간이기도 하다. 사안의 기술적 쟁점이 다툼 만한 경우,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외부 전문기관(안전진단 기관, 공학 감정 전문가, 실무에 밝은 법무법인의 산업안전팀 등)을 통하여 자체 사고원인 분석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공단의 판단을 직접 뒤집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수사기관이 공단 의견서를 단일한 사실인정 자료로 받아들이기 전에 대조·검토의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그 실무적 의의다. 다만 사업주의 자체 분석이 공단 조사와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제출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자료의 통과 초점 설정에 변호인의 개입이 요구되는 단계다.

필자가 근로복지공단 자문 명목으로 검토한 제3자 구상권 행사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 있다. 의견서의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항목이 설비 결함이나 작업방법 문제를 지적한 경우, 후속 구상 청구의 과실 비율 인정 범위는 거의 그대로 의견서 판단을 따라간다. 반대로 의견서가 피재자의 작업 방식 일탈이나 개인 보호구 미착용을 주된 원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구상 범위가 축소된다. 의견서는 중간 문서로서의 위상을 가지나, 실제 민사 구상 청구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본문서와 다르지 않다.

기소 법리 — 다단계 인과관계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구성하는 법리는 이른바 '다단계 인과관계' 구조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초래하고, 그 불이행이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2~3단계의 인과관계다. 검찰은 세 죄를 실제적 경합으로 구성하여 법정형 가중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세 죄의 관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하급심은 대체로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수사 단계 변호인의 법적 지위는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제243조의 2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제34조가 직접 규정한다(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 접견·서류·물건 수수할 권리). 한편 구속된 피고인 본인의 접견권은 제89조에 별도로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209조의 준용 규정을 통해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압수·수색의 장면에서는 제121조와 제123조가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과 참여의 기회 부여 의무를 정한다. 압수물의 열람·등사는 수사 진행 중에는 제한되고 공소제기 이후 같은 법 제266조의3에 의해 본격화되지만,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 진행

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열람 요청은 실무상 가능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변호인 또한 그 복제본을 피압수자로부터 제공받아 확보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제244조의3)가 적용되지 않고, 출석 의무의 강제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중대재해 수사에서는 현장 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므로, 출석 단계부터 변호인을 동반하는 실무적 판단이 요구된다.

5. 기소와 재판 — 죄수·양형·합의의 법적 위상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같은 법 제7조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근로자 사망 시)과 같은 법 제173조의 법인 벌금이 병과되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이 추가된다.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유죄 판결의 양형 분포는 중형과 경형 사이의 편차가 크다. 법 시행일인 2022. 1. 27.부터 2025. 9. 30.까지 선고된 유죄 138건을 분석한 대법원 양형연구회 2025. 12. 15. 심포지엄 발표에 따르면, 자연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전체의 8.57%에 그쳤고 집행유예 선고가 87.14%를 점하였다. 양형의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이 지역별로 가시화된다.

법원·선고일	사건	결론	특이점
대구지법 영덕지원 2024. 10. 16.	페콘크리트 상차 사망	중처법 무죄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 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고단 510 (2024. 12. 19.)	자동차부품 수공구 튕김 사망	중처법 무죄	상당인과관계 부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고단 484 (2025. 2. 19.)	건설현장 사망	중처법 무죄, 산안법 유죄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울산지법 2022고단4497	제조업 끼임 사망	대표 징역 2년 실형,	외부 안전점검 지적 방지

법원·선고일	사건	결론	특이점
(2024. 4. 4.)		법인 벌금 1.5억	
울산지법 (2025. 1. 9. 선고)	블로우 성형기 끼임 사망	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 실형	외부 위험 지적 미보고· 미개선
수원지법 형사14부	아리셀 화재 23명 사망	박순관 대표 징역 15 년 (※2심 징역 4년)	시행 후 최고형, 합의 감 경 제한

법원의 양형에 있어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지배적 감경 요소로 작동해 왔다. 위 유죄 70건의 자연인 피고인 중 69명이 유족과 형사합의를 이루었다는 통계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가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합의 감경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다만 2심에서는 합의를 다시 양형에 반영하고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선고형이 대폭 감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후술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 12. 15. 심포지엄에서 양형기준 정립 논의를 공식 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 판결 이후의 파급 — 형사를 넘는 불이익의 체계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업과 경영자가 지게 되는 불이익은 별도의 법적 체계를 통해 전개된다. 다만 '판결 이후'라는 표현은 법인 벌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형사·민사 판결의 직접 효력에만 국한된다. 그 밖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은 상당수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 직후부터 병행하여 누적된다. 건설업의 경우 사고사망만인물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기초로 산정되며, 시공능력평가의 감점도 고시 기준에 따라 직접 반영된다. 공공조달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신인도 감점 역시 해당 사업자가 형사적으로 최종 유죄를 받기 전에 누적될 수 있다. 대구·경북의 건설·공공조달 사업자에게 형사절차보다 이 행정·경제적 누적이 먼저 실질적 타격으로 인

식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50억 원 이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10억 원 이하)가 각각의 법에 따라 병과된다. 즉 중처법위반·산안법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전형적 사망재해 사건에서 법인이 부담하는 벌금의 이론적 상한은 두 법을 합한 60억 원 수준이다. 실제 사례에서 법인 벌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가 일반적이고, 예외적 대규모 사건에서는 십수 억 원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위반사실·재해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할 것을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대상을 사망자 연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으로 구체화한다.

건설업 사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협조 요청 체계의 일부로 운영),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능력평가의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실적액 감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신인도 감점,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에 반영된다. 사망 재해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부상 재해자의 5배이며,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통보일로부터 10일이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의 경우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제조업 사업자의 경우 위 사고사망만인율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으나, 원청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평가(SQ) 및 공급망 ESG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불이익을 경험한다. 이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의 상승,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 배정 제한, 주거대출 금융기관 여신 심사상 부정적 반영 등이 병행된다.

2부 — 대응과 예방

이 부는 1부에서 해부한 절차의 각 단계에서 기업과 경영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과 사전 예방의 구조를 서술한다. 실무상의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법령이 부여한 권리·의무·선택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판례의 해석을 정리한다. 각 항목의 결론은 짧은 요약 블록으로 병기하여 독자의 참조 편의를 도모한다.

1. 사고 이전 — 시행령 제4조 9개 호의 실질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9개 호로 구체화한다. 각 호는 독립된 의무이며, 판례는 각 호의 이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호 모두 '문서의 존재'가 아닌 '사고 이전부터의 실질 이행'을 입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사후에 소급 작성된 문서는 대체로 작성일·결재라인·증인 진술의 대조를 통해 적발된다.

호	요지	판례 기준	전형적 실패 모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명목상 계시로 불충분, 실제 하달 필요	액자걸이식 계시, 연간 갱신 부재
2	전담조직 설치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고단510: 외부 공시 조직도·인사발령 필요	겸직 명칭 변경, 인사발령 부재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울산지법 2022고단4497: 외부 지적 방치 시 중형	서식만 존재, 외부 지적 미개선
4	재해예방 예산 편성·집행	예산 부재는 타 호 불이행의 연쇄 사유	총무비 혼재, 집행 증빙 부재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의정부지법 2024고단4 등: 양식만으로 부족	인사평가표 끼워넣기, 실시 기록 부재
6	안전관리자 등 배치	산안법상 배치의무 + 중처법 제4조 병행	선임계만 제출, 실질 배치 부재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존재만으로 부족, 위험성평가 반영 필요	간담회 서명만, 의견 기재 부재
8	비상대응 매뉴얼·훈련	계획만으로 부족, 실시 기록 필요	소방훈련 기록 중복 활용
9	수급인 평가기준·관리비용·(건설/조선업)공사기간 기준	대법원 2024. 11. 14. 2023도14674: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가격 위주 선정, 안전실적 검토 부재

요약

각 호의 이행은 '문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일과 개정 이력이 사고 이전이냐'로 판단된다.

외부 안전진단기관의 지적사항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는 체계의 유무는 제3호·제5호의 이행 평가에서 결정적 요소로 기능한다.

사후 소급 작성은 판례상 거의 예외 없이 적발되며, 적발 시 가중사유로 전환된다.

2. 사고 직후 — 초기 법적 대응

사고 직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법령이 부과하는 의무의 정확한 이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의 보고의무, 제56조의 현장 보존의무, 작업중지명령 준수 의무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법령이 보장하는 권리의 온전한 행사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이하가 규정하는 변호인 선임권,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제121조·제123조의 압수·수색 시 참여권이 그것이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실무적 보장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문언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접견은 통상 원활하나,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의 초동 조사 장면에서 접견 요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관찰된다. 이 경우 사업주 측은 접견 요구 사실을 조사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접견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조사 참여권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필요'를 이유로 변호인의 발언 또는 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 왔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부당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내용의 정확한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고 통지의무도 이 단계의 중요 쟁점이다. 대부분의 근재보험 약관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통지를 요구하며, 통지 해태 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고 경위서와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통지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이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두 계통에 제출되는 문서의 기본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구성되어야 한다.

요약 — 사고 직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확보해야 할 것

- 변호인 접근(법령상 권리, 감독관 첫 접촉 이전에 성립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 산안법 제54조·제56조 의무의 정확한 이행(보고와 현장 보존은 별개의 의무다)
- CCTV 및 근태·출입 기록의 원본 보존(덮어쓰기 주기 확인 및 별도 매체 복제)
- 근재보험·산재보험 약관상 통지의무의 이행

피해야 할 것

- 산안법 제55조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넘는 작업재개 시도(별건 기소 가능성)
- 산안법 제56조에 해당하는 현장 훼손 행위(의정부지법 2024고단4 판결 참조)
- 사내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사고 경위 언급 및 사후 지시(사전 인식·방치의 증거로 전환)
- 위험성평가서·교육일지의 사후 수정 또는 가필(판례상 적발 시 가중사유)

3.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작업중지명령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은 크나, 그 명령 자체가 법적 다툼의 대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1차적 대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에 근거한 해제요청이다. 해제요청서에는 재해원인의 시정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외부 안전진단기관의 보고서 포함),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적 이행 일정, 관련 근로자의 재교육 이력 등을 첨부한다. 해제심의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결과 해제가 결정된다. 제2차적 대응은 명령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이 가능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소명자료로는 공급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수출 신용장 만기, 주거래처의 공급 독촉 문서 등이 실무상 활용된다.

해제요청과 행정쟁송은 법적으로 병행 가능하다. 해제요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에 근거한 행정청 내부 절차이고, 행정쟁송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한 외부 구제 절차다. 두 절차는 근거 법규와 결정 주체가 다르므로 동시 진행에 법적 장애가 없다. 다만 실무상 두 경로의 병행은 신중하게 판단된다. 해제요청 단계에서 관할 노동관서 및 심의위원회와의 협의 구조가 중요한데, 같은 관청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의가 사실상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류되거나 관계 악화로 해제 심의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 사안에서는 먼저 해제심의위원회 경로에 집중하여 외부 전문가 진단과 재발방지 계획을 설득 자료로 제시하고, 심의가 장기 표류하거나 정지될 조짐이 뚜렷할 때 한정적으로 행정쟁송(특히 집행정지)을 검토하는 순차적 접근이 일반적이다. 한편 명령의 전부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도 가능하다. 작업장 내 특정 공정 또는 특정 설비에 한정된 위험이 완화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해제를 먼저 요청할 수 있고, 이는 명령의 범문이 '해당 작업'의 중지를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언상의 근거를 가진다.

요약 — 작업중지명령 대응의 두 갈래

- ① 산안법 제55조 제3항 해제요청 — 재해원인 시정 + 재발방지 계획 + 외부진단 보고서
- ② 행정쟁송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두 경로는 법적으로 병행 가능하나, 실무상 관계 악화·심의 보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제요청 경로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산안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별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4. 수사단계의 방어권

수사단계의 통계는 이 단계가 전체 절차의 실질적 승부처임을 보여준다. 법 시행일부터 2025. 5. 경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된 사건은 700건을 상회하는 반면, 이 중 검찰의 기소는 약 90건, 불기소는 약 30건으로 집계된다(김·장 법률사무소 2025. 5. 뉴스레터). 다수의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의미이며, 이 단계가 법리적 방어의 밀도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구간임을 시사한다.

수사단계의 법적 방어권은 형사소송법이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진술거부권(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권(제243조의2), 압수·수색 참여권(제121조),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제417조) 등이 그것이다. 법 해석상 다룰 수 있는 지점 또한 풍부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는 시행령 제4조 각 호별로 개별 판단되며, 다단계 인과관계의 각 단계는 분리 주장이 가능하다. 경영책임자 특정의 법리(실질적 안전보건 결정권의 소재) 또한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에서 실제로 관철된 논거는 크게 세 갈래로 분류된다. 첫째는 '경영책임자 특정의 불분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는데, 실제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이사나 본부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둘째는 '상당인과관계의 부정'이다.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그 불이행이 당해 사고의 발생과 직결되는 원인이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결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확인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이 그 예로 자주 인용된다. 셋째는 '의무 이행의 실질적 증명'이다.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이행에 관한 문서·회의록·외부 점검 기록이 사고 이전 작성일로 일관되게 제시되고, 사고와의 연결고리가 객관적으로 단절된 경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청은 이 중 둘째·셋째 논거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되는 장치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또는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로, 검찰 사무규칙에 근거가 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의 실제 신청·개최 사례는 제한적이거나,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중 하나로서의 위상은 가진다.

5. 합의의 법적 설계

형사합의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으로서, 합의서의 내용이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상 합의서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할 법적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형사합의의 사실을 명시하고, 법원 제출용 별도 양식의 처벌불원서를 병행 작성한다. 둘째, 민법 제731조에 근거한 일체의 민사청구권 포기를 명시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분의 공제 여부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전원의 서명을 요한다. 셋째,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근거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각 조항의 누락은 추후 별소 제기의 근거가 된다.

넷째, 비밀유지를 규정하되, 위반 시 효과를 위약벌 또는 위약금 조항으로 실효적으로 뒷받침한

다. 다섯째, 지급방식이 분할인 경우 불이행 시 합의 전체의 효력 상실 및 일체의 권리 회복을 규정하는 실효조항을 병기한다. 여섯째, 합의의 주관적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인·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수급인 등 관련 당사자를 합의 당사자에 포섭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일곱째, 사과문·조의금·추모 조치 등 부수조건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확정한다.

요약 — 합의서의 일곱 축

- ① 처벌불원 (별도 양식 병행) ② 민사청구권 포기 (산재 공제 명시, 상속인 전원 서명)
- ③ 부제소 + 중처법 제15조 포기 ④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
- ⑤ 지급방식과 실효조항 ⑥ 효력의 주관적 범위 (법인·대표·임원 각각)
- ⑦ 부수조건 (사과문·조의금 등) 서면화

표준양식은 없다. 표준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일방에 불리하게 설계된 것이다.

6.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구제

형사판결과 별개로 전개되는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독립한 법적 구제 경로가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통보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서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실질적 의미는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해당하여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제3자의 과실,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고 등)를 입증하는 데 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의 엄격성은 실무상 주요한 법적 함정이다.

형사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은 공통된 구조를 가진다. 사업장 공표처분(산안법 제10조), 작업중지명령(제55조), 과태료 처분(제170조 등)은 모두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

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원칙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10일 이내 이의신청은 이러한 일반 행정쟁송 경로와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특별 이의 절차이며 기간의 엄격성에서 구별된다.

맺음

지금까지의 해제는 사실의 기술이다. 여기서 한 걸음만 물러나 이 구조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기록해 둔다.

첫째, 현재의 양형 분포 — 실형 8.57%, 집행유예 87.14% — 는 유지되기 어렵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12월 양형기준 정립 논의를 공식 개시한 것은 변동의 시작점이며,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1심이 유족 합의 감경의 무게를 스스로 낮춘 것은 이 변동의 방향성을 선언한 판결이다. 1~2년 내 양형기준이 정비되면 현재 수준의 합의 감경은 그 자체로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수사 700건, 기소 90건, 불기소 30건이라는 집계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법의 실질적 승부처는 법정기 소가 아니라 수사의 6개월이라는 것이다. 기소 전에 결정되는 것과 기소 후에 결정되는 것의 무게는 다르다. 같은 사고 경위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주장·입증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가 그 이후의 전개를 정한다.

셋째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이다. 시행령 제4조 9개 호를 이행한 사장과 이행하지 않은 사장의 차이는,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과 벌금의 자릿수로 나타난다. 이 문장은 동어반복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 해제가 전제로 한 모든 절차와 판례가 결국 이 한 줄로 압축된다.

필자는 대구 소재 변호사로서, 대구의 기업인들이 사고의 한복판에서 서울 대형 로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공장의 법적 지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이 해제를 내는 이유다.

부록 — 인용 판결 및 법령

인용 판결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중처법 확정 2호. 중처법위반·산안법위반·업과사의 상상적 경합 관계 확정.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1부 3장)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준 —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유무.
-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전담조직 불이행은 인정, 상당인과관계 부정으로 중처법 무죄. 전담조직 구성의 판단 기준 제시.
- 대구지법 영덕지원 2024. 10. 16. 선고
공사금액 50억 미만 적용 유예.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공사 계약금액 기준.
-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중처법 무죄(건설공사발주자), 산안법 유죄.
- 울산지법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법인 벌금 1.5억. 외부 안전점검 지적 방지.
- 울산지법 2025. 1. 9. 선고
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 실형. 외부기관 위험 지적 미보고·미개선.
- 의정부지법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판결
중대재해 현장 훼손 별건 기소. 사후 문서 가필·소급 작성의 적발 사례.
- 수원지법 형사14부, 아리셀 화재 사건
1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합의 감경의 제한적 반영.
- 수원고법 형사1부 2026. 4. 22. 선고, 아리셀 항소심
원심 파기. 박순관 징역 4년, 박종언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 비상구 설치 의무 문언 해석 전환·경영책임자 업무 위임 범위·합의 양형 반영 방식 전환 세 쟁점. 상고심 진행 예상.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섹션 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및 재직자 조건의 효력.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섹션 3) 주식 공동상속 시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의 범위.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에버랜드 사건)
(섹션 2)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의 구분, 후자에 한한 이사의 업무상 배임 책임 논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섹션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엄격해석 기조 확립.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섹션 2)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으로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신주발행 및 BW 발행의 무효 법리.
-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섹션 2)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의 실무적 활용 긍정.

인용 법령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각 호), 제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8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3조, 제155조, 제156조, 제167조, 제168조, 제170조, 제173조, 제17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표 대상 사업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방식),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작업장 출입구),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32조(보호구 지급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능력평가의 세부기준」
-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제209조 준용), 제121조, 제123조, 제222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66조의3, 제417조
- 형법 제40조, 제268조 / 민법 제731조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제23조
- 상법 제341조의4, 제342조,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74조의2, 제376조, 제380조, 제382조의3, 제385조, 제396조, 제418조,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9조, 제434조, 제438조, 제449조의2, 제462조, 제466조, 제516조의2,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제542조의7, 제542조의16, 제635조
- 미국 Delaware 판례: Donahue v. Rodd Electrotype (Mass. 1975), Wilkes v. Springside Nursing Home (Mass. 1976), Weinberger v. UOP (Del. 1983), Kahn v. M&F Worldwide (Del. 2014)
- 독일 주식법(AktG) 제311조, 제317조 / 일본 회사법 제179조, 제847조의3

참고 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2025. 12. 15.)
- 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주요 불기소 사례 및 시사점」 (2025. 5.)
- 인용 판결 전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및 각 법원 공개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소수주주 축출의 구조

— 유상증자 희석, 배당 거부, 그리고 한국 상법이 가지 않은 길

0. 도입

앞선 섹션이 시간축의 해제였다면 이 섹션은 구조축의 해제다. 중대재해는 사고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개되는 절차의 문제이지만, 소수주주 축출은 시점이 아니라 법제의 설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 한국 상법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다수결 원리로 짜놓았고, 그 다수결을 뒤집을 실제적 공정성 심사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다. 이 설계 안에서 대주주가 작정하고 움직이면, 소수주주는 회사법만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이 해제가 짚어내려는 것은 '소수주주가 당하는 사연'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짜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공격 수단이 무엇이고, 방어 수단이 어디까지 작동하며, 어디에서 막히는지. 해외 법제는 이 구도를 어떻게 다르게 짜 놓았는지. 그리고 이 구조 앞에서 실무가 놓일 수 있는 진짜 자리는 어디인지. 이것이 본 해제가 그리는 지도다.

1부 — 대주주의 공격 수단

한국 상법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수결 원리로 일관되게 설계하였다.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특별결의 요건의 배치는 모두 다수에 의한 소수 제어를 보장한다. 대주주가 이 설계를 활용하여 소수주주의 지분 가치와 의결권을 체계적으로 축소시키는 수단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희석

가장 고전적인 공격은 신주의 제3자 배정이다. 원리는 단순하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주지 않고 대주주의 우호세력에게 배정한다. 소수주주의 지분 비율은 자동으로 줄어든다. 예컨대 소수주주가 30%를 가진 회사에서 기존 주식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신주를 대주주 측 제3자에게 배정하면, 소수주주의 지분은 30%에서 20%로 축소된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희석 효과는 더 커진다. 공격의 관점에서 보면 저가 발행은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소수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지분의 가치가 두 번 훼손된다. 비율의 축소와 가치의 저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법은 이 공격을 두 장치로 제어한다. 첫째 장치는 상법 제418조의 요건 규제다.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제2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제3자 배정을 허용한다. 2011년 신설된 제4항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 대한 사전통지·공고 의무를 부과한다. 둘째 장치는 상법 제424조의2의 사후 책임이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두 장치는 실무상 모두 좁게 작동한다. '경영상 목적'의 판단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데, 회사 측이 제출하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투자 유치 협상의 경위 등이 대체로 수용되는 경향이다. 차액 반환의무도 '통모'와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 두 요건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소수주주의 입증 부담이 크다. 형사적 책임 역시 좁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에버랜드 사건)과 같은 날 2008도9436 판결(삼성SDS 사건)은 주주배정 방식의 저가 발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업무상배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배정의 저가 발행에 한해서만 그 책임

을 논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다만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 9인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이 병기된 의견이 팽팽히 갈린 판결이다. 반대의견은 '실권주의 대량 발생이 예정된 주주배정 방식은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주주배정 형식이면 저가발행이 허용된다'는 법리 자체가 대법원 내부에서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의 기준이 정착되어, 대주주가 주주배정 형식을 갖추면 형사경로는 봉쇄되고, 제3자 배정 형식으로 가더라도 '경영상 목적'의 외피를 두르면 민사경로도 대부분 막힌다. 공격의 통로는 넓고 방어는 좁은 비대칭이 이 영역의 법구조다.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리픽싱 조항

두 번째 공격은 메자닌 증권을 경유한다. 전환사채(CB)는 사채로 발행되었다가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사채에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착된 증권이다. 두 증권의 공통점은 발행 시점에는 채권이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리픽싱 조항'이 붙으면 전환·인수의 조건이 유동화된다.

리픽싱이란 발행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함께 하향 조정되는 약정이다. 예컨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주당 10,000원, 사채 총액이 10억 원이었다고 하자. 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 수는 10만 주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여 리픽싱이 작동한 결과 전환가액이 5,000원으로 조정되면, 같은 10억 원의 사채가 20만 주로 전환된다. 발행된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은 추가로 희석된다. 리픽싱 조항은 원래 투자자 보호 장치로 도입된 것이지만, 대주주 측이 이 증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 하락 국면이 오면 지배력 강화 장치로 전환된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은 이 국면에서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발행은 무효이고, 같은 법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BW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뒤 신주인수권 행사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을 확장한 것이다. 다만 판시가 요구하는 '심대한 변화'의 판단이 법원에 남아 있어, 실제 인용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비상장 폐쇄회사의 경우 시가 산정의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여 리픽싱의 발동 요건과 공정성 심사가 상장회사보다 더 불투명하다는 추가 한계도 있다.

3. 배당 거부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관만으로 배당결정권을 이사회에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이사회 결의 경로가 열리려면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어느 경로든 대주주가 과반 의결권 또는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면 배당 결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 상법상 소수주주의 배당청구권은 '구체적' 배당결의가 선행되어야 발생한다. 즉 결의가 없으면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이 한국 상법에서 소수주주가 배당 거부를 법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다.

이 구도에서 대주주는 배당을 억제하면서도 임원 급여·상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부동산 임대 등 우회적 경로를 통해 부를 이전할 수 있다. 소수주주는 자본을 회사에 묶어둔 채 이러한 우회적 이전을 바라보게 된다. 후술할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치분이 이 지점에서 일정 정도 견제 기능

을 수행하지만, 부의 이전 자체를 원상회복시키는 실체적 수단은 아니다.

4. 감자·주식병합을 통한 압박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가 지시하는 제43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사항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결손의 보전(補填)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로 족하다고 정하여, 결손 보전 명목의 감자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으로 가능한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 대주주가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면 불균등 감자 또는 주식병합을 통해 소수주주의 지분을 사실상 소멸시킬 수 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360조의24는 보유 비율이 95%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집중이 선행되어야 법정 축출이 가능하다. 주식병합은 이러한 지분 집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 열거한 공격 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메자닌 발행·배당 거부·감자·주식병합)은 각각 독립된 카테고리이지만, 실무에서 이들은 순서대로 또는 병행적으로 동원되는 도구상자로 기능한다. 회사의 자금사정·정관 구조·주주간계약의 유무·법원의 가치분 인용 경향·주가 동향에 따라 대주주는 유상증자에서 시작하여, 이것이 유지청구나 무효의 소로 막힐 조짐이 보이면 리픽싱 조항이 붙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선회하고, 자기주식 처분이나 감자·주식병합을 조합하는 경로를 선택한다. 이 연쇄가 하나의 계획된 시나리오로 움직인다기보다, 앞선 공격의 봉쇄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도구가 꺼내지는 구조에 가깝다. 소수주주의 방어 전략이 특정 공격 수단의 차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어선은 대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도구상자를 조망하고, 그 우회로 전반에 대한 계약적·법적 차단막을 미리 설계하는 관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2부 — 소수주주의 방어 수단과 그 한계

상법은 소수주주의 방어 수단을 여러 조항으로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각 조항은 제소기간·지분율·입증 요건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고, 판례는 무효사유를 대체로 좁게 해석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결과적으로 소수주주가 회사법의 방어 수단만으로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뒤집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한편 비상장 폐쇄회사의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방어 수단을 꺼내기 전에 선행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자신의 지분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의 확정이다. 상법 제466조(회계장부 열람권)나 제385조 제2항(이사 해임청구)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를 해 온 회사 또는 차명 주식이 섞여 있는 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자신의 현재 지분율을 회사 문서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다. 이때 선행 수단이 되는 것이 상법 제396조 제2항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다. 같은 조항은 지분율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든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치분을 통한 강제 집행이 실무상 가능하다. 이 절차로 자신의 지분율을 회사 문서상 확정된 다음에야 3% 요건형 소수주주권(제466조·제385조 제2항 등)의 행사가 법적으로 확실해진다.

1.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제429조.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 원고적격은 주주·이사·감사. 무효사유는 조문에 규정되지 않아 판례로 형성되어 왔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은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거래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무효사유의 엄격해석 기초를 확립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은 이 엄격해석의 틀 안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으로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라는 유형을 명시적으로 무효사유로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 측이 '경영상 목적'을 사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심대한 변화'의 판단이 법원에 남아 있어, 실제 인용례는 제한적이다.

2.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상법 제424조에 근거한 사전적 구제수단. 납입기일 전까지 피보전권리(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발행에 따른 유지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실무상 어려움은 두 층이다. 첫째, 회사가 납입기일을 기습적으로 단축하여 소수주주의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있다. 둘째, 법원이 거래안전을 이유로 인용에 보수적이다.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회사가 위반하여 발행을 강행한 사안에서, 가처분 위반이 단독으로 무효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학설은 대체로 긍정하나, 판례는 '다른 사유와 결합하여'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위 2008다50776 판결이 그 예다.

3.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

상법 제376조(결의 취소), 제380조(결의 무효·부존재).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기. 취소사유는 절차·방법상 하자 또는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여기서 중요한 구조적 지점은,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 자체는 법령·정관 위반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앞서 본 '배당 거부' 공격에 대한 법리적 방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4. 이사 해임 청구의 소

상법 제385조 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이 요구하는 '중대한 사실' 요건의 입증 부담 때문에 실무상 인용률이 낮고, 해임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보수적으로 내려져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5.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치분

상법 제466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의 문언은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당성의 입증책임을 회사에 분명히 지우고 있다.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은 이 법리를 한층 구체화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고, 주주가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유지청구·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긍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결정은 이사회 의사록에 '별첨·별지·첨부' 등의 표현으로 내용이 인용된 첨부자료는 의사록의 일부로서 열람·등사 청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다. 소수주주가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은 이유다. 다만 열람 자체로 대주주를 굴복시키지는 못하고, 그 결과 확보한 자료가 후속 분쟁(주총결의 취소의 소, 이사 해임 청구, 형사 고소 등)의 증거 자료로 기능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다.

3부 — 상사비송의 구조적 한계

위에서 살핀 방어 수단은 모두 형성적·감독적 성격을 가진다. 법원은 결의나 발행을 취소·무효화할 수 있고, 열람을 명할 수 있으며,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대주주의 경영 판단 그 자체를 뒤집지는 못한다. 법원이 배당을 명령하는 제도가 없고, 유상증자의 '경영상 목적' 판단을 법원이 실체적 공정성 관점에서 대체할 수 있는 통로도 열려 있지 않다.

한 가지 구조적 전환이 관찰된다. 지배주주가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감자·주식병합 등 구조개편 자체를 절차적으로 저지하기 어렵다. 이 국면에서 소수주주의 실질적 방어는 결의 무효화에서 주식 가치의 공정성 다툼으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인다. 법적 경로는 제한적이지만 존재한다. 상법 제360조의25는 95% 이상 보유 지배주주에 대하여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매매가액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한다. 상법 제374조의2는 영업양도·양수·임대 등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며, 이 또한 가액 협의 불성립 시 법원의 가액 결정 절차로 이어진다. 합병·분할·주식교환 등에서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도 각 조문에서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경로가 모든 구조개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유형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실익이 '결의 저지'보다 '공정 가액 확보'에서 현실화되는 구도가 형성된다. 감자·병합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에서 가치 산정의 공정성을 법원의 판단으로 끌어오는 것이 실무상의 방어선이 된다.

이 한계 앞에서 소수주주에게 남는 현실적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엑시트, 즉 지분의 매각이다. 그러나 비상장 폐쇄회사에는 매각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인데, 이는 상법이 열거한 합병·영업양도·분할 등 특정 국면에서만 발동된다. 대주주가 이러한 국면을 회피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소수주주가 이를 돌파할 구조

적 장치는 없다.

최근 상법 개정은 이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의 일단을 보인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1차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두 층의 수정을 가했다.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제2항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이 신설되어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공평 대우의 실체적 기준이 조문에 들어왔다. 이는 영미의 공정대우의무(duty of fair dealing)와 평등대우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첫 걸음이다. 다만 이 조항이 개별 유상증자·배당거부·합병비율 산정 등의 구체적 결정에 대한 실체적 심사 기준으로 법원에 의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용될지는 앞으로의 판례 축적에 달려 있다.

2025년 9월 9일 공포된 2차 개정은 집중투표제 규율을 강화하였다. 상법 제542조의7은 현재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배제 봉쇄 구조를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부칙에 따라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확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역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이다.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3차 개정은 자기주식 규율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상법 제341조의4가 신설되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소각의무가 법정화되었고, 다섯 가지 예외(주주 균등 조건 처분,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우리사주제도, 법령상 활용, 경영상 목적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가 열거되었다. 예외

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확정하고 매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635조 제9호·제10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개정으로 제342조(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균등 원칙), 제529조의2·제530조의13(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제542조의16(상장회사 신탁계약 자기주식 규율)이 함께 신설·정비되었다. 자기주식을 통한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 경로가 제도적으로 좁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련의 개정은 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이며, 비상장 폐쇄회사에서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실체적 장치(배당청구권 강화, 억압 구제 제도 도입 등)는 여전히 입법 공백에 남아 있다. 제382조의3 제2항의 문언적 수용이 폐쇄회사 현장에 닿기까지는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고, 그 사이 다수결 설계 위에 구축된 축출의 도구상자는 여전히 작동한다.

4부 — 한국 상법이 가지 않은 길

비교법적으로 보면 한국 상법의 구도가 갖는 특징은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매사추세츠주의 판례법은 폐쇄회사 맥락에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다. *Donahue v. Rodd Electrotypes of New England* (Mass. 1975)와 *Wilkes v. Springside Nursing Home* (Mass. 1976)이 그 출발점이며, 델라웨어는 *Weinberger v. UOP* (Del. 1983), *Kahn v. M&F Worldwide* (Del. 2014) 등을 통해 이사·지배주주의 행위에 대한 공정성 심사(entire fairness review) 기준을 발전시켰다. 이 체제에서는 법원이 경영판단 영역에도 실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 한국 상법이 가지지 못한 핵심 장치다.

독일은 Konzernrecht(기업집단법) 체계를 통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손해보전 의무를

실체법적으로 규율한다. 주식법(AktG) 제311조, 제317조는 지배관계의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구조를 명시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회사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847조의3)과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179조 이하)를 도입하여 지배·피지배 관계에서의 구제 수단을 일부 확장하였다.

세 법제에 공통된 특징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절차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적 공정성의 심사' 또는 '손해의 보전'이라는 실체법적 개입에까지 확장한다는 점이다. 한국 상법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한국에서 비상장 폐쇄회사의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버티기 앞에서 법적으로 무력해지는 구조적 배경이다.

5부 — 결어 : 싸움은 계약서 단계에서 끝난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지시하는 바는 분명하다. 소수주주의 방어가 회사법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진짜 싸움은 지분 투자 시점의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SHA)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확보해 두어야 할 실무적 조항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신주 발행 시의 우선인수권(pre-emptive right)과 반희석 조항(anti-dilution)은 지분 희석의 1차 방어선이다. 드래그얼롱(drag-along)과 태그얼롱(tag-along)은 엑시트 국면에서의 동반매도 및 공동매도 권리를 규율한다. 배당정책의 최소 기준(minimum dividend policy)은 배당거부에 대한 사전적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 이사 지명권은 이사회 단계에서의 의사결정 균형을 확보한다. 동의사항(reserved matters)은 유상증자·주요 자산 처분·정관 변경 등 소수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소수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풋옵션(put option)은 엑시트가 불가능한 폐쇄회사에서 강제 매도의 통로를 계약상 확보한다.

이 조항들 중 어느 하나가 빠져 있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 그 공백을 회사법으로 사후에 메우는 것은 어렵다. 앞서 본 방어 수단들의 제소기간·지분율 요건·입증 부담을 돌파하는 길은 좁고, 설령 돌파하더라도 법원이 경영판단의 실체에 개입하지 않는 한 결과는 제한적이다.

맺음

이 해제가 지시하는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한국 상법의 구도에서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의사결정을 뒤집는 경로는 원래 좁게 설계되어 있다. 실무 변호사의 능력으로 메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없는 한계의 지도다.

둘째, 이 구조에서 소수주주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대주주가 형사 리스크를 드러낸 경우, 다른 하나는 엑시트를 유리한 가격에 성사시키는 경우다. 정의의 회복은 이 구도 안에서 예외적 사건이다. 회사법의 방어 수단 목록은 길지만, 그 길이가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는 짧다.

셋째, 따라서 변호사의 진짜 일은 분쟁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다. 주주간계약의 한 줄 — pre-emptive right, drag/tag-along, reserved matters, put option — 이 분쟁이 터진 후의 10년간의 소송보다 많은 것을 결정한다. “들어갈 때 막아야지, 나올 때는 늦다.” 이 문장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섹션의 모든 조문과 판례가 결국 이 한 줄로 수렴한다.

이 달의 판례

— 대법원 뉴스레터에서 뽑은 주목할 판결 들

판례 ①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및 재직자 조건의 효력

사실관계.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매년 노사합의로 마련된 지급기준에 따라, 원수보협료·구상금·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을 수령해 왔다. 지급기준에는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퇴직 후 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판시. 원심은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경영성과 항목의 달성 여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이 없고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23다302838 판결 등)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법리는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262592·265102, 같은 해 2. 26. 선고 2022다215715, 3. 12. 선고 2021다285182·2023다269641·269658·2025다210219·2023다249906 등 후속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실무 함의. 이 판결군의 핵심은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이 '지급조건의 구조'에서 갈린다는 점이다. 지급조건이 재무지표(財務指標, 당기순이익·영업이익·EVA 등)의 달성에 연동되어 있으면 평균 임금성이 부정되고, 지급조건이 근로제공 그 자체 또는 개인 근무실적에 연동되어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대구·경북의 중소기업 중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 지급조항을 두고 운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조항의 문언을 재검토할 실무상 필요가 있다. 지급조건을 재무지표 기준으로 명확히 구성해 두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급은, 퇴직금·산재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업주에게 불리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조항이 재무지표에 연동되어 있는지, 개인 근무실적에 연동되어 있는지는 지금부터 판단의 분기점이다. 이 점점이 먼저다. 퇴직금·산재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터진 뒤에는 문구 수정이 늦다.

판례 ②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식 공동상속 시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의 범위

사실관계.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와 다른 자녀들(피고 2·3)이 이 주식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결렬되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중이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①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단독 또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 ②원고가 단독주주 또는 공유주주임의 확인을 청구하였다.

판시.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주식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의 준공유 상태가 되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였다(대법원 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①회사를 상대로 한 단독주주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②단독 또는 공유상태의 명의개서청구는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

는 이상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③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인용된다는 구조를 확정하였다. 원심은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위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 1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공유상태 명의개서 자체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려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수는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원심 이유를 시정하였다.

실무 함의. 이 판결은 창업세대의 고령화와 상속이 본격화되는 국내 중소기업 현실에서 지배구조의 공백이 발생하는 전형적 국면을 다룬다. 1세대 창업주가 사망하고 2세대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순간,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속 개시일자로 동결되고 단독 명의의 명의개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동안 의결권의 행사는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자 지정 절차에 의존하게 되며, 지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자체가 봉쇄된다. 본 판결은 이 교착 상태에서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에 한정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 국면에서 각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창업자 생전에 정리해 둘 수 있는 것과 창업자 사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의결권의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간계약·정관·유언의 세 층에서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지금 이 판결을 읽고 해야 할 일이다.

발행 직전 속보 — 2026. 4. 22. 아리셀 항소심 선고

본지 창간호 마감 직전인 2026년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고법판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사망 23명·상해 9명, 사망자 중 20명이 파견근로자)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파견법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심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었는데, 2심의 이러한 선고형 변화는 신설될 양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부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하여도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쟁점 ① — 비상구 설치 의무의 문언 해석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였다. 같은 조 제1항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할 뿐, 층별 비상구 설치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문언에 근거하여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대한 비상구 설치 의무 자체를 부정하였고, 비상구·비상 통로 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아울러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비상구 부분의 판단 전환이 결과적 양형 감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쟁점 ② — 경영책임자의 업무 위임

박순관 대표가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아리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항소심은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

5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요건 해석에서, 경영책임자가 일상 업무를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책임 면탈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점이 확인된 부분이다. 다만 이 판시는 '책임 면탈 목적'의 부재에 방점이 있으며, 위임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중처벌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쟁점 ③ — 합의의 양형 반영 방식

원심은 피해자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항소심은 이와 달리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합의의 양형 반영을 제한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였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합의의 법적 위상에 관한 실무 지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지 창간호 각 장과의 연결

이번 판결이 건드린 세 쟁점은 본지 창간호 섹션 1의 핵심 논점과 직접 연결된다. 비상구 설치 의무의 문언 해석은 1부 1장·2장의 안전보건기준 일반, 경영책임자 업무 위임 법리는 1부 3장의 하도급 구조에서 다룬 '실질적 지배·관리' 기준과 내부 위임 구조의 경계 문제, 합의의 양형 반영은 1부 5장의 죄수·양형·합의의 법적 위상 부분과 정면으로 닿는다. 창간호 본문이 다루는 법리적 구조 위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월호 예고 및 상고심 대응

본 판결은 선고 당일 기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유족 측의 상고 의사가 확인되어 상고심 진행이 예상된다. 본지는 판결문 공개 후 차월호(2026년 5월호)에서 아리셀 항소심을 단독 주제로 심층 해제한다.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후속 호에서 별도로

다룬다. 본 박스의 서술은 선고 당일 공개된 판시 요지를 기준으로 하며, 판결문 공개 시 세부 사실관계와 법리 판시에 관한 정밀한 대조가 수행될 예정이다.

월간 궤도 · MONTHLY GWEDO

창간호 · 2026년 4월 발행 · 발행인: 신한솔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301, 402호 · orbitlaw.co.kr

본지의 내용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